

“번역메모리 활용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토론문

곽중철¹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영과^{1*}

kwakgsit@naver.com^{1*}

1. 개요

1) 본 연구는 번역산업 내 CAT들의 도입 활성화 및 활용 방안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의 번역학 연구에서 새로운 주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번역메모리를 축적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했던 번역회사와는 달리, 번역사들은 실질적으로 번역메모리를 생성해 온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 주장에 관해서는 별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해왔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임이 틀림없다.

2) 이에 본 연구는 번역메모리의 소유권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번역회사 내의 비즈니스 관행을 살펴본 후, 이를 저작권법의 관점에서, 나아가 칸트의 정언명령을 근거로 그 정당성을 논의했다. 번역메모리의 저작권을 각기 비즈니스 관행, 법적·철학적 측면에서 고찰함으로써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자에게 묻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다.

2. 토론 및 질문 사항

1) 질문1: 해당 연구에서 번역메모리를 '어문저작물(literary works)'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것이 올바른 해석이 맞는지 궁금하다. 어문저작물의 영문 명칭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문학 작품에 해당하는 듯하다. 하지만 문학작품을 번역할 때 CAT들을 사용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며, 이에 따라 CAT들을 통해 생성되는 번역메모리 역시 문학과는 거리가 먼 텍스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메모리에 투입되는/또는 이를 통해 산출되는 매뉴얼 등과 텍스트 등을 literary work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2) 질문2: 동 연구에서는 번역회사들이 번역사의 동의 없이 번역메모리를 소유하고 재활용해 온 관행을 비판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번역회사 뿐 아니라,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거대 IT기업들 역시 대량의 번역메모리를 축적하여 Google Translate, Bing과 같은 무료 번역서비스를 제공한 지도 수년이 흘렀다. 이미 여러 다양한 주체, 특히 일반 대중까지 번역메모리를 활용한 무료 번역서비스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존 관행을 변화시키려는 시도가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기득권자인 번역회사 등의 저항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3) 질문3: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해결책 중 하나는 번역메모리 거래소의 도입이다. 번역서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번역이나 통역은 현재까지 저작물로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인 점을 고려하면 거래소 도입은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번역메모리 거래소를 도입한다면 그 주체는 누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 예를 들어, 특정 정부 기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저작권거래소를 운영할 기관이 갖춰야 할 법적, 재무적 역량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